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3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조은희 • 이양수 • 서일준

김희정 • 서천호 • 박정하

주진우 • 박충권 • 조승화

이성권 · 유상범 · 강승규

최보윤 • 이달희 • 송언석

고동진 · 강선영 · 김민전

서명옥 · 최은석 · 배준영

조정훈 • 이종욱 • 이만희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 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 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 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069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생	第15條(事務機構등)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 임명한다.
<u>③</u> ~ <u>⑥</u> (생 략)	<u>④</u> ~ <u>⑰</u> (현행 제3항부터 제1
	6항까지와 같음)
<u>⑩ 제10항</u> 의 사무처장 및 <u>제11</u>	<u>⑱ 제11항제12</u>
<u>항</u> 의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	<u> </u>
과 <u>제16항</u> 의 委囑幹事는 당해	<u>제17항</u>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	
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 監督한다.	